

제12차 각료회의를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WTO, 남은 과제는?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안 홍 상

I. 머리말 : 현장 스케치

현장에서 지켜본 WTO 제12차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6.12~17, 제네바)는 순식간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회의 4일차이자 당초 폐회가 예정된 6.15(수)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예상한대로 유의미한 성과가 거의 없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이 적중한 듯 했다. 그간 관행처럼 되풀이되었던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세 부과 유예) 연장도 인도·남아공 등의 반대로 불발되는 것처럼 보였고, 20여년간 끌고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WTO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도 요원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두 빈손으로 귀국을 준비할 무렵 각료회의를 하루 더 연장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대부분의 협상단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협상장으로 모였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협상 과정이 다소 불투명하고 소수 회원국 중심의 ‘그린 룸(Green Room)’ 회의가 계속되어 정확히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각료회의가 끝난 이후 첫 대사급 회의(7.7)에서 다수의 국가가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최종 합의문서와 결과에 대한 회원국간 소통 미흡, 주요 의제에 대한 소수 국가 위주의 협상 등 절차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할 정도였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과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문제는 동 절차가 되풀이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고, 공식 협상의 마지막 날(6.16(목))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변화는 극적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목요일 오후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이 인도·남아공과 선진국 간 타협으로 합의될 당시까지만 해도 모두 원래 예상하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등 추가 성과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예고된 기한을 넘어서 6.17(금) 새벽 1시경 △MC-12 결과를 종합한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자 추가 성과에 대한 기대로 회의장 분위기가 고양되었으며, 새벽 3시경 △과잉어획/과잉능력 등 주요 요소가 빠지긴 하였으나 모두가 고대하던 수산보조금 협상과 함께 △백신에 대한 TRIPS(지재권 협정) 면제(waiver), △위생 및 검역협정(SPS) 조치 등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당일 새벽 5시에 폐막식을 마치고 나오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은 비록 밤샘 회의를 통해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2013년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 이후 약 10년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이자 20여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적실성을 보여준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과 △식량

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타결로 인해 위기에 빠진 WTO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II. MC-12 성과의 의의 및 평가

MC-12 성과는 총 10개 문서로, 전체를 아우르는 결과 문서와 함께 △수산 1건, △농업 관련 3건, △코로나19 대응 2건, △기타(①전자적 전송물, ②소규모 경제, ③TRIPS 非위반 제소) 3건 등으로 이루어진 소위 “제네바 패키지(Geneva Package)”가 도출되었다. 지난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에서는 관행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사항¹⁾들 이외에 다자간 도출된 유의미한 문서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단연코 최고의 성과는 20여 년만에 합의된 수산보조금 협상으로서, 이는 통상과 환경·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연계된 분야로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10년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으로서 WTO가 여전히 국제적인 통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1) 그간 관행적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TRIPS 非위반 제소, △소규모 경제 등 3개 각료 결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WTO가 통상과 연계된 보건 분야 등에서 위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거진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2건의 문서에 합의하여 WTO의 적실성과 시의적절한 대처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다자규범 창설 등 입법 기능에 대한 실패와 불신, △2019년 12월 이후 상소기구 기능 마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WTO의 대내·외 위기를 맞아 WTO 3대 기능에 대한 개혁을 차기 각료회의²⁾까지(분쟁해결 기능은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결과 문서 채택으로 WTO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과 문서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인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³⁾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동 분야에 대한 논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 위원회 또는 회의체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시행되거나 러시아 참석을 이유로 회원국들이 협상 참여를 거부(boycott)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불구하고 다자간 합

의할 수 있는 성과가 다수 도출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WTO 사무국측에서 협상 거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막식 직후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도전(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세션을 두어 정치적인 규탄을 위한 별도 시간을 할애했 것이 이후의 정치적 이슈와 협상의 실질적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막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다자통상 무대에서 회원국의 역할이 다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여타 회원국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다소 잠잠해졌으며, 오히려 항상 발목을 잡는 역할을 수행했던 인도 통상장관(Piyush Goyal)이 각료회의를 끝까지 참석하며 수산보조금, TRIPS,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등 주요 주제마다 전격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여 합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자협상 타결의 한계로 점차 복수국간 협상(JSIs; Joint Statement Initiatives)이나 WTO 밖에서 협상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자협상에 주력한 인도 입장에서 다소 불리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2) 차기 각료회의인 MC-13은 잠정적으로 2023년 12월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3) MSM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II. 분야별 주요 결과

개별 각료선언/각료결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앞서 언급한 주요 분야별로 묶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결과 문서

MC-12 결과 문서는 전체 논의 사항을 아우르는 문서로서 △각료회의 개최 배경과 목적, △개도국 특혜(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O 개혁, △LDC(최빈개도국) 특혜와 이의 연장, △가입, △무역원활화, △서비스,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 등 신규 의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각료회의시 채택된 각료 선언/결정 등을 첨부하였다.

작년 11월 오미크론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MC-12 연기 직전에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며, 마지막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은 부분은 WTO 개혁과 신규 의제에 대한 부분이었다.

WTO 개혁에서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부분은 개혁 관련 논의를 수행할 주체 및 회의체로서, 선진국 진영은 크게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구성과

인력으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반면, 개도국들은 모든 회원국의 참여하에 일반이사회 및 산하기구를 주도로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결과 문서의 각주⁴⁾와 같이 일반이사회 및 산하기구에 제안을 하거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신규 의제의 경우,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 모두 복수국간 협상(JSIs; Joint Statement Initiatives)의 형태로 진행되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남아공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당초 결과 문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각료회의 직전 수차례의 실무회의 끝에 WTO에서의 실제 논의 내용보다는 여러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및 보편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본문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본래 각료회의의 개최 배경 및 목적이 약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19 영향 등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기에는 회원국 간 논란이 예상되어 한 개 문단으로 작성

4) For greater certainty, in this context, this does not prevent groupings of WTO Members from meeting to discuss relevant matters or making submiss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료회의 직전까지도 지난 11월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대다수의 기대 수준이 낮았던 분야이다. 당초 예상했던 범위보다 상당히 축소된 내용이지만 21년 만에 타결되고, 거의 10년만에 최초로 합의된 다자협상으로서 WTO의 입법 기능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WTO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타결한 최초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료회의 전/후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분야로서, 과잉어획/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유류보조금 포함) 지급 금지 및 원양어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금지 등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합의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형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되지 않는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지급 금지 의무로부터 개도국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어

획량·어족자원 상태 등에 대한 통보 등 투명성 관련 조항 등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잉어획/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도국 특혜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을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와 △인도가 제시한 3가지 조건(개도국 유예기간, 개도국 면제 최소 허용기준, 영세어업 허용 구간)에 대한 합의 도출이 불발되어 결국 협정문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다만,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이후 4년 이내에 과잉어획 관련 보조금 및 개도국 특혜 등 잔여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실패시 협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종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도입되어 추가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보조금 등 일부 민감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당분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제를 협정 발효 이후로 미루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앞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농업

농업은 당초 △무역왜곡을 유발하는 국내보조 감축,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PSH),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수출경쟁·수출제한 등의 투명성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해 선진-개도국간 대립이 지속되

었다. 이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닥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WTO 사무총장은 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5월경 농업에 대한 작업계획 및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제시하였다.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계획은 7대 주제별⁵⁾로 협상원칙을 정하는 수준이었으나 회원국간 이견 조율에 끝내 실패하였다. 각료회의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 △위생 및 검역협정(SPS) 선언 등이 합의된 바, 우선 식량안보 각료선언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준수할 행동 지침의 성격으로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12월 일반이사회에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도 및 탄자니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에 대한 각료결정이 재차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되어 끝내 합의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SPS 협정 25주년 계기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규범적 성격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SPS 각료선언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점차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한 끝에 MC-12 성과로 확인되었다.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롯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 WFP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에 합의한 것은 WTO가 전통적인 통상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백신 TRIPS 면제(waiver)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전 세계가 겪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해 WTO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응고지 WTO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로서, 크게 2개 주제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WTO 차원의 역할을 기술한 각료선언으로, 코로나19 백신·진단·치료제 및 기타 필수 의약품의 수출제한을 자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 수단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5) ①국내보조, ②시장접근, ③수출경쟁, ④수출제한, ⑤면화, ⑥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PSH), ⑦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

작년 6월 선언문 마련을 목적으로 Walker 대사(뉴질랜드)가 조정자가 임명되었다가, 제네바 주재 대사로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Castillo 대사(온두라스)가 후임으로 임명되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완화된 문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 끝에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인도·남아공을 필두로 다수의 개도국들이 제기한 백신에 대한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면제(waiver)이다. 이는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인 바, 선진국들은 그간 기업의 백신 개발 인센티브 부족으로 정부-업계간 협력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이러한 waiver를 지지하였고, 다수의 회원국이 나서기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국(Quad)이 회원국을 대표하여 문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4자간 합의한 문안에 대해 영국·스위스 등은 제약업계 등 백신 특허권자의 편

에서 문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개도국 등이 반발하여 이견이 좁혀지는데 한계가 노정되었다. 특히, 적용 대상인 개도국의 정의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waiver 적용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중국을 타겟으로 하여 세계 백신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waiver 적용을 배제하는 각주를 추가하였다. 중국은 5월 일반이사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waiver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각료회의 기간 동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각주 규정⁶⁾을 통해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개도국이라도 강제실시 규정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하도록 하고, 백신 외에 진단제와 치료제에 대한 waiver 확대 적용 여부는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역시 미증유의 위기에 WTO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WTO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

6) For the purpose of this Decision, all developing country Members are eligible Members.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existing capacity to manufacture COVID-19 vaccines are encouraged to make a binding commitment not to avail themselves of this Decision. Such binding commitments include statements made by eligible Members to the General Council, such as those made at the General Council meeting on 10 May 2022, and will be recorded by the Council for TRIPS and will be compiled and published publicly on the WTO website.

미가 크다고 하겠다.

5. 기타

상기에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 합의된 여타 선언/결정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연장, △소규모 경제에 대한 작업계획, △TRIPS 非위반 제소 등 3건이다. 동 사항들은 관행적으로 각료회의 계기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으나, 다른 2개 분야와는 달리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연장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간 관행이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관세 부과 유예) 연장은 모두 합의를 이룰 것을 예상하면서도 각료회의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분야로서, 개도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는 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우선 확인되어야 하고, 선진-개도국간 디지털 격차(digital gap)를 좁히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역 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 체제 편입을 위해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거나 최소한 차기 각료회의 시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각료회의

중간에 차기 각료회의(MC-13) 일정에 대한 혼선(2023년 3월 說), 개도국들의 확정적인 일자 명기 요청과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안감 등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 개최시 MC-13까지 연장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 MC-13 개최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필요시 통상장관 또는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되었다.

그에 비해 여타 2개 분야는 쟁점 없이 합의된 바, 소규모 경제에 대한 작업계획은 소규모 국가의 무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투자 유치 및 자연재해 발생시 개도국 무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TRIPS 非위반 제소는 TRIPS 협정 위원회에서 지재권 非위반 제소의 범위 및 형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 기간 동안 회원국들에 의한 非위반 제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IV. 맺음말 : 향후 이행계획

금번 MC-12를 통해 유례없이 풍부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것도 상당한 일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MC-12 이후 7월 대사급회의 및 일반이사회를 통해

MC-12 성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한 바, 내년 연말 개최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MC-13)까지는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제 이행을 위해 분주할 예정이다.

WTO 개혁 관련, 일반이사회 의장(스위스 대사)은 9월 초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WTO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합의하고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나, 이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영국 등 10여 개 국가가 WTO 개혁에 대한 초안 작업을 개시하였으며, 모니터링/이행 기능을 시작으로 협상 기능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일반이사회 등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제네바에서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체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가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바, 2023년중 분쟁해결체제 개선을 위한 세부 문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응고지 사무총장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오랜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비준인 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국내적으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교착 상태를 보인 농업 협상의

향후 진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가을에 수련회(retreat)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TRIPS waiver의 경우 백신 외에 진단제와 치료제에 대한 waiver 확대 적용 여부를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내정되어 있어서 9월부터는 동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응고지 사무총장은 MC-12 성과에 힘입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MC-12 성과의 조속한 이행, 여성·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아젠다 확산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글로벌 아웃리치(outreach)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10월경 아시아 지역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계획을 타진하고 있으며, 동 방향 계기에 한국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전과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MC-12의 성공이 이후 각료회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며, WTO는 여전히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적어도 금번 각료회의를 통해 WTO가 여전히 다자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식량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MC-12에서 받은 지침인 WTO 개혁에도 성공적으로 부응하여 WTO가 과거에 지녔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